

중소기업청 공고 제2015-141호

「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(중소기업청 고시 제2014-61호)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5년 4월 6일

중소기업청장

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(안) 행정예고

1. 개정이유

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신규 지정, 신기술(NET)인증제품 통합에 따른 성능인증 대상제품 및 성능인증 적합성심사 생략가능한 신기술(NET)인증제품의 범위 조정, 성능인증 운영절차 및 세부 운영사항 등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지정(안 제3조 개정)

-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ICT 융합 품질인증제품 지정

나. 신기술(NET)인증제품 통합에 따른 성능인증 대상제품 추가(안 제6조제1항에 따른 별표 1 개정)

- 신기술 통합 인증요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

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신기술(NET)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임을 확인한 제품

다. 성능인증 적합성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신기술(NET)인증제품의 범위 추가 및 생략기준 명확화(안 제8조)

- 신기술 통합 인증요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신기술(NET)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임을 확인한 제품을 적합성심사 생략 대상에 포함
- GS인증제품을 포함하거나 이용하여 제조한 하드웨어 제품은 제외
- 성능인증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 잔여한 경우에만 적합성심사 생략

라. 시험기관의 범위 정의 및 성능검사성적서 인정범위 개정(안 11조)

마. 영문인증서 발급 근거 마련(안 제12조)

바. 적합성심사위원회 소관업무 조정 및 사전질의 근거 마련(안 제17조)

-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심사를 적합성심사위원회 소관으로 규정
- 심사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심사일 전에 사전질의서를 신청업체에 제공하여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근거 마련

사. 공장심사평가표 개정(안 제10조제1항에 따른 별표 2 개정)

- 전용실시권을 특허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평가표에 반영

아. 기타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는 용어 및 문구 정정

3. 의견제출

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□단체 또는 개인은 2015. 4. 27.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□반 여부와 그 이유)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다.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

※ 보내실 곳 :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
중소기업청 공공구매관로과
(☎ 042-481-4581, Fax 042-472-7932)

붙임 :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
일부개정령(안)